

# 1.약관명: 주택도시기금내집마련디딤돌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_채권유동

화목적\_포함)

2.시행일: 2024.9.27

3.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미적용

## 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b>제 6 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b></p> <p>③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포함)(이하“세대원”)의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하며,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이하 “추가 주택”)하는 경우 정해진 처분기한 내 추가주택을 처분할 것을 확약합니다.</p> <p>④ 본인은 제6조 및 제7조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귀(행)사의 청구가 있거나 결혼, 재혼, 이혼 등 배우자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p> <p>⑤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 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p>	<p><b>제 6 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b></p> <p>③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포함)(이하 “세대원”), <b>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이하 “미성년 형제·자매”)</b>의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하며,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 <b>미성년 형제·자매가</b>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이하 “추가주택”)하는 경우 정해진 처분기한 내 추가주택을 처분할 것을 확약합니다.</p> <p>④ <b>본인은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b></p> <p>⑤ 본인은 제 6 조 및 제 7 조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귀(행)사의 청구가 있거나 결혼, 재혼, 이혼 등 배우자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p>	<p>디딤돌대출 기금중복 대출 위반시 회수조항 신설</p>

(이하생략)	<p>⑥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약속합니다.</p>	
--------	---	--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b>제 7 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b></p> <p>1.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p> <p>2. 제6조제4항, 제5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생략)</p>	<p><b>제 7 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b></p> <p>1.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제 6 조 제 1 항 내지 <b>제 4 항의</b>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p> <p>2. <b>제 6 조제 5 항, 제 6 항의</b>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p>	<p>디딤돌대출 기금중복 대출 위반시 회수조항 신설</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b>제 11 조 무주택검증·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b></p> <p>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포함)의 무주택 또는 소득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p>	<p><b>제 11 조 무주택검증·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b></p> <p>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포함), <b>미성년 형제·자매의 무주택,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확인</b>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p>	<p>디딤돌대출 기금중복 대출 위반시 회수조항 신설</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b>제 17 조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b></p> <p>.&lt;신 설&gt;</p>	<p><b>제 17 조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b></p> <p>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됨이 확인되는 즉시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p>	<p>전세피해 결정 취소 및 철회시 대출금액 회수 하거나 가산금리 적용</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b>-고객 고지 사항-</b></p> <p>1. 본인이 신청일 현재 '대출상담 및 신청서' 및 본 약정서 제6조에 진술한 소득, 주택보유수 또는 임대차 현황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 건 담보 주택에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본건 대출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p> <p>또한,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고객 고지 사항-</b></p> <p>1. 본인이 신청일 현재 '대출상담 및 신청서' 및 본 약정서 제 6 조에 진술한 <b>소득, 주택보유수,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임대차 현황</b>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한날로부터 1년 동안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본건 대출은 제 7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p> <p>또한,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디딤돌대출 기금중복 대출 위반시 회수조항 신설</p>